



LIVING GOD  
RENEW AND  
TRANSFORM US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Called to communion, committed to justice

## 성희롱 대처 지침서

이 문서는 법적 조치나 처벌을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이 문서는 우리 공동체가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하고 모든 관련자를 위한 돌봄과 긍휼과 정의를 추구하는 방법에 관한 언약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 1. 도입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류의 기본 존엄성을 확인한다. 이 진술은 기독교 공동체에게 성(sex), 연령, 인종, 민족, 계층 그리고 종교에 상관없이 행동하고 모든 인류를 존중하라고 도전한다. 인간의 성(sexuality)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하해야 마땅하다. 성적인 희롱과 학대의 뿌리는 인간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에 있다. 그 권력이 침해하거나 희롱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범법자들은 자기 행동이 결백하거나 비의도적이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성희롱은 희생자의 인식과 경험에 의해 정의된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모든 사람의 기본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헌신을 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무시에 도전하고 신앙과 복음의 원리를 적절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믿는다. 각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은 성, 인종, 연령, 계층, 카스트 또는 부족에 상관없이 만인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헌신을 포함한다. 성희롱은 단지 성적인 문제 만이 아니라 권력관계의 착취로도 이해해야 한다.

인류 가족의 깨어짐은 범세계적 실상이다. 그러한 깨어짐의 한 형태가 바로 인간에게 대한 폭력이다. 이 폭력은 성적 학대, 아동학대, 성희롱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며 압도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지고 있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을 의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깨어짐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가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지속하기로 헌신한다.

### 2.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은 초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달갑지 않은 성적 접근의 모든 형태로 정의된다. 성희롱은 빈정거리는 말과 미묘한 암시로부터 모욕적이고 달갑지 않은 포옹, 쥐어짜기, 꼬집기, 입맞춤, 노골적인 요구 그리고 물리적 학대나 폭행까지 망라하는 광범위한 행동에 관련될 수 있다. 달갑지 않은 행동들은 용납할 만한 행동수칙의 침해로 간주될 것이다. 특히 고소자가 어떤 식으로든 “달갑지 않게” 느낀 자기 감정을 미리 알려주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심지어 회의와 우리 가족과 교회들 가운데서조차 성희롱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3. 성희롱은 다음 중 한두 가지를 포함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 노골적인 혹은 은밀한 성적 접근 또는 접촉.
- ◆ 정신적 학대(외설적 농담, 빈정거림, 용납할 수 없는 가시적 접촉, 유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 육체적 학대나 공격(애무, 달갑지 않은 포옹과 입맞춤, 그리고 성기(genital) 접촉도 포함될 수 있다).
- ◆ 신체의 민감하고 개인적인 부분을 (직접 혹은 의복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애무하기.

#### 4. 당신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 부적절한 몸동작(제스처)이나 접촉은 단호히 거부하라.
- ◆ 공격자에게 그런 행위는 달갑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이나 몸동작으로 밝히라.
- ◆ 공적인 장소에서 희롱이 지속되면 대중의 주의를 끌라.
- ◆ 당신의 우려를 신뢰하는 사람과 나누라.
- ◆ 당신이 성희롱을 당했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총회 목양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라.

#### 5. 총회에 제출된 공식 항의(고소)를 위한 후속 절차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목양팀이나 총회 조정사무실에 성희롱 고소나 고발을 접수해야만 한다.

- ◆ 고발은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 목양팀은 고소인을 사적으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고소인은 도덕적 지원을 해 줄 만한 친구 한 명을 동반시킬 수 있다.
- ◆ 목양팀은 기소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소인과의 사적인 인터뷰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이다.
- ◆ 피고소인에게 고소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동반할 만한 적절한 친구를 선택하여 도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조언해 주어야 한다.
- ◆ 첫 인터뷰 후 목양팀은 조사를 진행할지 중단할지 그리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 6. 목양팀이 고려할 조치들

목양팀이 권고안을 제시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에는 피고소인의 의도, 해당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왜 그행동이 적절한지 또는 부적절한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행동과 행동결과에 책임을 지려는 자발성이 포함될 수 있다.

목양팀은 다음과 같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 a) 희생자 돌봄

1. 목양팀 멤버들과 총무는 희생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보아야 한다
2. 희생자에게 상담과 보호가 제공해야 한다.

##### b) 피고소인

1. **교육/의식** : 반드시 성희롱 상황은 아니지만 부족한 판단력을 보인 경우. 분명한 지도를 꼭 해야 하며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2. **교육적 경고** : 상황은 명백하게 부적절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으나 확실한 성희롱은 아닌 경우. 분명한 경고로 왜 그 행동이 부적절한지 설명해주고 그 행동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
3. **징계 조치** : 성희롱이 결부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적절해 보이는 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 피고소인의 회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비용으로 회의장과 총회구역을 떠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피고소인이 희생자와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 ◆ 희생자와 상의하여 피고발인이 희생자에게 상황에 걸맞는 사과를 하는 것을 권고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 ◆ 희생자는 또한 목양팀의 조치를 넘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 총회 목양팀

### 1. 구성

성희롱 사례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목양팀의 구성원:

- Rev. Chris Ferguson, General Secretary
- Rev. Dora Arce-Valentin, Executive Secretary, Justice and Partnership
- Rev. Cheryl Meban, Executive Committee member
- Rev. Martin Engels, a pastor from the local context (to also act as the liaison with police, legislative authorities as is needed).

목양팀은 다음 원리와 기술을 제공한다:

- ◆ 팀 내에서 **비밀**을 유지하는 능력
- ◆ 사회적,인간적 관계 속에서 권력의 역학이 지닌 함축성과 파문의 인식
- ◆ 비슷한 사례에 대한 목회 상담 경험
- ◆ 희생자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주의 깊게 반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는 헌신
- ◆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우려들을 독립적이고 균형있게 평가하는 능력

### 2. 지침

- ◆ 목양팀의 목적은 공정성, 정의, 신중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목양팀은 모든 상황에 적절한 목양적 돌봄을 베풀려고 노력할 것이다.
- ◆ 성희롱 고소를 받은 사람들은 제시된 증거에 대한 주의깊은 조사를 통해 고발이 입증될 때까지 결백하다고 간주될 것이다.
- ◆ 고소내용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목양팀은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책임을 질 것이다.
- ◆ 목양팀은 공식적으로 상의하기로 결정한 대상자나 조사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사람들 이외에 그 누구하고도 조사내용을 논의해선 안된다.